

강서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
(업무대행) 협약 동의안
심사보고서

2019년 11월 28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11월 5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11. 28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장애인복지장)

가. 제안이유

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(사)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사업개요

- 사업명: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
- 위탁근거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- 위탁기간: 3년(2020. 1. 1. ~ 2022. 12. 31.)
- 위탁체: 보건복지부에서 (사)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강서구지회를 대행기관으로 선정함(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-777호)

2) 추진일정

- 2019. 12월: 위탁협약 체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-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: 123,300천원(시 50% : 구 50%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가. 종합 의견

- 이 동의안은 기존에 (사)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에서 업무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던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

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
- 보건복지부 대행기관 선정으로 (사)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에 지정하여 위탁하는 만큼 사후 지도·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제9조의3(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)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3조의3(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)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. 이 경우 건축, 토목, 조경 및 장애인복지(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)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가.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

나.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
다.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
라.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
마.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

바. 장애인복지(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)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

2.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

3.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